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지원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8
----------	-----

제출년월일 : 2005. 4. 12

발의자 : 방종영 의원
외2인

1. 대안의 제안이유

- 주민발의로 접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지원조례는 달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 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지원을 통해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근본적으로 학교급식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이루 어진 사항으로서
-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사항이므로 의결전에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집행기관과 주민대표자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사항이나 관내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 주요내용을 수용하는 동조례안의 대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골자

-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근거법령을 학교급식법으로 단일화 함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등은 삭제
- WTO 위반소지가 있는 용어는 삭제함
- 우수 농·수·축산물의 정의에서 달성군 및 인근지역 삭제
- 상위법을 벗어난 포괄적인 규정을 내포할 수 있거나 과다한 예산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문구도 삭제함
- 학교급식지원과 직접관계되지 않는 학교급식여전 개선사업 부분을 삭제함
- 조문의 명료성을 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간결한 용어사용
- 교사단체가 추천하는 자 → 교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

첨 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지원조례안(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과 아울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득증대와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중 각급 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축산물, 우수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달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학교급식지원)**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6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군수와 관할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중학교는 달성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등
- ② 달성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2. 학교급식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심의·결정
3. 학교급식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국·과장
2.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3. 달성교육청 급식 담당과장
4.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6.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2인
7.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8. 축산단체(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1인
9. 학교급식개선운동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표결권을 가진다.

제9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 공급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공급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내역을 군수가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매년 식품비 지원금 정산내역을 매분기 종료후 20 일까지 초·중학교는 달성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급식지원금과 관련된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달성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품질이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접 품질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시 식재료 공급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달성군학교급식지원조례안(대안)에 대한 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과 관련하여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부분인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 지원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상위법이나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

아울러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 지원은 우리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

- 방종영 의원 외 2인 발의 -

서명날인서

의원명	서명	날인
방종영	방종영	방
정종태	정종태	정
김판조	김판조	김